

직원표창규정

시행일 : 2025. 02. 07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경희대학교 (이하 '본교'라 한다.) 행정직원(이하 '직원'이라 한다.)에게 수여하는 표창의 내용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① 이 규정은 본교에 재직 중인 직원에 적용한다. 단, 부속 의료기관 직원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② 전항에서 직원이라 함은 「학교법인 경희학원 정관」에서 정한 행정직원을 말한다.

제3조(표창의 종류) 표창은 총장표창과 근속상으로 구분하여 행한다.

제4조(총장표창) 총장표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수여한다.

1. 본교의 명예와 발전에 공헌한 업적이 뚜렷한 자
2.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본교 발전에 공헌한 자
3. 재해를 예방 또는 수습한 공적이 뚜렷한 자
4. 감사 결과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

제5조(근속상) ① 직원으로서 장기 근속하여 본교발전에 기여한 자에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창한다.

1. 10년 근속상 : 만 10년 이상 근속한 자
2. 20년 근속상 : 만 20년 이상 근속한 자
3. 30년 근속상 : 만 30년 이상 근속한 자

② 근속기간은 학교법인 경희학원 산하 기관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다.

③ 휴직, 직위해제, 병가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 단, 육아휴직의 경우 최초 1년에 한하여 근속기간에 산입(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은 전 기간을 산입)하며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근속기간에 산입한다.

제6조(표창권자) 표창은 총장이 행한다.

제7조(총장표창 추천자) ① 소속 부서장은 본 규정 제4조에 의한 표창 대상자가 있을 때 추천서와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인사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제4조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기획조정처장이 추천한다.

② 인사처장은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공적심사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.

제8조(표창시기) ① 근속상 표창은 8월 말일과 2월 말일을 기준으로 수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총장표창은 개교기념일에 수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필요에 따라 수시로 행할 수 있다.

제9조(표창방법 및 부상) ① 표창은 소정 서식에 의한다.

② 전항 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금 또는 부상을 수여 할 수 있다.

제10조(표창의 제외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표창이나 표창추천 대상자가 될 수 없다.

1. 징계의결이 요구중이거나 징계처분이 종결되지 아니한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
2. 직위해제 중인 자

제11조(공적심사위원회) ①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(이하 '위원회'라 한다.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캠퍼스 통합으로 운영하되, 필요에 따라 서울과 국제캠퍼스에 각각 둘 수 있다.

③ 위원회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2조(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 행·재정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조정처장, 인사처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임명직 위원은 인사처장이 추천하고 위원장이 임명한다.

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단, 임명직 위원의 퇴위 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③ 간사는 인사처에서 담당자를 지정하고,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.

제13조(공적심사) ① 표창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. 다만, 제5조 근속상 표창 및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표창이 확정된 경우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에서 공적을 심사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.

1. 공적 내용이 교훈 및 경희정신과 일치하는지 여부
2. 공적 내용이 뚜렷하고 객관적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
3. 공적 내용이 본교 발전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
4. 표창 대상자의 결격 사유 유무
5. 상금, 부상의 종류 및 정도
6.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4조(표창업무) ① 표창업무의 주관 부서는 인사처로 한다.

② 인사처장은 위원회 심의 결과를 첨부하여 총장의 결재를 득한 후 표창에 관한 제반 사항을 집행한다.

제15조(이중표창 금지)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.

제16조(표창 수상자 처우) 본 규정에 따라 표창을 한 경우에 「직원 인사평정 규정」에 의거하여 종합근무평정에 반영한다.

부 칙

본 규정은 199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규정은 2008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규정은 2013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규정은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규정은 2021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규정은 2024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규정은 2025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.